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52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의자 : 주진우 · 조배숙 · 윤한홍

이인선 · 송석준 · 김도읍

곽규택 · 김석기 · 박상웅

박준태 · 박정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
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는데 2025년 12
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이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하여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
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반면 해당 혜택과 관련하여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
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
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안 제6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1) 중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7년”을 “9년”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집행부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경우

6. 법인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100분의 25 이상이 수도권 안의 사무소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

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 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이전하는 경우: <u>7년</u></p> <p>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u>5년</u></p> <p>3) (생 략)</p> <p>나.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p> <p>4.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9년</u></p> <p>나) -----</p> <p>-----</p> <p>---<u>7년</u></p> <p>3)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집행부서-----</u></p> <p>4. (현행과 같음)</p> <p>5. <u>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이전본사에서 개최하지 않은 경우</u></p> <p>6. <u>법인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100분의 25 이상이 수</u></p>
--	---

<p>③ ~ ⑦ (생 략)</p>	<p><u>도권 안의 사무소로 근무지를</u> <u>이동한 경우</u> ③ ~ ⑦ (현행과 같음)</p>
--------------------	--